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1. 3. 5
- 나. 제출자 : 사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01. 3. 5(의안 제7호)
- 라. 심사일자 : 제53회사천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1. 3. 23)

2. 제안이유

- 가.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만 설치 운용하던 식품진흥기금을 시·군·구에도 설치 운용토록됨에 따라
- 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천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기금은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구성함(안 제3조)
- 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보건소장을 기금출납명령관, 식품위생담당주사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함(안 제5조)
- 다.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제16조)
- 라. 기금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시에는 관련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기금을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자금으로 용자하고 용자기간, 용자범위를 정하였음(안 제8조)
- 바. 기금의 용자신청방법, 금융기관에 용자업무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13조)

4. 법적 근거

- 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제43조

5. 전문위원검토보고 요지

- . 동 조례안은 2000년 1월 12일 식품위생법에 시,군,구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개정되어 동 법을 근거로 제정하게 되었음.
- . 조례의 기본 틀은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음.
- .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 때는 준칙에 의한 제,개정이나 무비관적으로 상위 조례를 참고하는 기존 타성을 버려야 할 것임.
- . 동 조례안 중 제3조 기금의 조성 조항과 제4조 기금의 용도 조항은 식품위생법과 동법 시행령에 있는 것을 다시 조례에 규정한 중복 규정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 그 이유는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표기함으로 인하여 상위 법령에서 문구가 조금만 바뀌어도 다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낭비를 방지하여야 하며
- . 상위법 개정과 발맞추어 신속히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시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를 운용하는 사태까지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조례는 덮어두고 법령만 보고 행정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조례의 무용론까지 대두될 수 있음.
- . 따라서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첨부 : 수정안 1부.

< 수 정 안 >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생략)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생략)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제3조(삭제)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구입 비용자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3.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 보상금 7. 기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4조(삭제)

원 안	수 정 안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생략)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생략)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생략)	제4조(기금의 운용계획)(생략)
제7조(사업의 집행) (생략)	제5조(사업의 집행)(생략)
제8조(기금의 용자) 기금은 <u>제4조제1호의</u> 영업시설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기기 설치·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용자한다.	제6조(기금의 용자) 기금은 <u>별 제71조 및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거</u> 영업시설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기기 설치·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용자한다.
제9조(용자계획의 공고) (생략)	제7조(용자계획의 공고)(생략)
제10조(용자신청) (생략)	제8조(용자신청)(생략)
제11조(심의회 설치) (생략)	제9조(심의회 설치)(생략)
제12조(용자한도) (생략)	제10조(용자한도)(생략)
제13조(용자금대여) (생략)	제11조(용자금대여)(생략)
제14조(사후관리) (생략)	제12조(사후관리)(생략)
제15조(보고 등) (생략)	제13조(보고 등)(생략)
제16조(결산 및 보고)(생략)	제14조(결산 및 보고)(생략)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생략)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생략)
제18조(시행규칙) (생략)	제16조(시행규칙)(생략)